

제 2 장 상품 무역

제 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상품에 적용된다.

가. 부속서 III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나. 부속서 IV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다. 부속서 V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2. 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2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I에 규정된다.

제 2.3 조 관세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VI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관세의 기준 세율

1. 각 상품에 관하여 부속서 IV·V 및 VI에 규정된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 세율은 2005년 1월 1일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이하 “MFN”이라 한다) 관세율로 한다.

2. 당사국이 특정 시점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MFN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IV·V 및 VI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및 낮은 기간 동안 그 관세율이 적용된다. 감축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동안, 당사국들은 감축된 MFN 관세율에 기초하여 철폐계획을 지속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3. 부속서 IV·V 및 VI에 따라 계산되어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제 2.5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이 발효된 때에는, 부속서 V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및 조세 외의 당사국들 간의 상품 무역에 관한 모든 수입이나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각 당사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철폐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치는 새로이 도입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내국민대우

당사국들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 그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 2.7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들은 기술적 협의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접촉선의 성명 및 주소를 교환한다.

제 2.8 조 기술규정

1.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BT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협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에 협력한다.

가. 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강화

나.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관련 표준 및 지침을

기초로 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증을 촉진.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의 인증 체제 또는 기관 간 적절한 다자협정에 따라 인정되고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관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촉진

3. 당사국들은, 이 조의 맥락에서, 정보의 교환을 신속히 확대하고 서면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 위치한 기관이 특정 규정에 대하여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관한 협정

나. 적합성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다.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라.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한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수용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제8.1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합의한다.

5.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들은 특정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또는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당사국들 간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고, TBT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협의를 가질 것을 합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 2.9 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

1.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6조 및 제1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모든 보조금의 존재·정도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를 검토 중인 당사국은 조사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일 동안의 기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수령 후 10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한다.

제 2.10 조 반덤핑

1. 당사국들은 다음을 조건으로 1994년도 GATT 제6조 및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가.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반덤핑 절차의 개시를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적합하게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국은 상품을 덤핑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협의를 허용한다. 협의의 결과는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전달된다.

나. 당사국이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관세 적용” 원칙을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제 2.11 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협정상 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에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하는 조건하에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긴급조치를 최소한도로 취할 수 있다.

2. 긴급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사에 의거하여, 증가된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의 초래가 우려된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서만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 상의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밖의 당사국들 및 공동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는 증가된 수입에 의하여 초래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제안된 조치에 관한 정확한 기술, 제안된 개시일, 예상되는 존속기간 및 그 조치의 점진적인 제거를 위한 일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4.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하의 정지. 또는

나. 그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적용된 MFN 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적용된 MFN 관세율

5. 긴급조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하여져야 한다.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공동위원회의 검토 후, 조치는 최장 3년의 기간까지 취하여질 수 있다. 조치 종료 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종전에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공동위원회는 사안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정보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다. 그러한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상호 합의된 보상이 없는 경우,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은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는 즉시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의 선택에 있어 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보상조치는 통상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갖는 양허의 정지 또는 긴급조치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조치를 적용한다.

7.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 된다.

8.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조치를 포함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조치 및 긴급조치의 총 적용기간에 기초한다.

9. 모든 잠정조치는 늦어도 20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제4항에 규정된 조치의 존속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2항에 규정된 조사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10.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제 2.12 조 국제수지 위기

1. 당사국들은 국제수지 목적의 제한적인 조치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와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한정된 기간 동안 비차별적으로 취하여지고 국제수지 상황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1994년도 GATT와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3. 이 조상의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 2.13 조

예외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

당사국들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는 1994년도 GATT의 해당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조항들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국영무역기업에 관하여, 제17조와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나. 일반적 예외에 관하여, 제20조. 그리고

다. 안보 예외에 관하여, 제21조